

부산고등법원 2019. 12. 19 선고 2019나54675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의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19. 12. 19 선고 2019나54675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9. 6. 19 선고 2018가합2453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용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상윤

피고, 항소인M지역주택조합

변론 종결2019. 11. 28.

판결 선고2019. 12. 19.

주 문

1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'인용 금액표' 중 '인용 금액'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. 9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효관

판사김정우

판사조지희

별지